청렴韓세상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실태조사 개요 및 기준 ····· 5

Ⅲ. 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 ····· 9

Ⅳ. 개선방안 및 협조사항 ····· 23

Ⅴ. 붙임자료 ····· 31

1.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 33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37
3.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계획(안) ····· 79

Ⅵ. 참고자료 ····· 93

1. 분야별 업무담당자 ····· 95
2.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관련 참고 법령 등 ····· 96

Ⅰ

추 진 배 경

Ⅰ 추진 배경

□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국외공무여행** 등 예산낭비 사례 지속 발생

○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이 미진한 상태

※ '13년 5월 현재 17개 지방의회 제정

참고 : 지방의원 비리관련 보도사례
▪ 계룡시의회 의원.직원 외유논란(충청매일, 2012.6) ▪ 강원지역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언제까지(연합뉴스 2012.2) ▪ 유성구 의회 '외유성 연수' 이젠 칼 빼야(한겨레 2012.1.) ▪ 기초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근본적 개선 필요(mbc 2011.4) ▪ 외유가려고 예산 편법 편성 김천시의회(2011.9) ▪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선거법 위반(남양주 시정감시단, 2012.2) ▪ 기초의원 업무추진비 횡령의혹(디브로드 뉴스 2012.8)

□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통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내.외부 감사(조사)등이 전무한 상태

※ 각종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증가 추세
민선1기(78명)→민선2기(79명)→민선3기(262명)→민선4기(293명)→민선5기(323명)

□ 이러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적발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II

실태조사 개요 및 기준

1. 실태조사 개요
2.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및 편성기준

Ⅱ 실태조사 개요 및 기준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2. 7. ~ 8월(기관 당 1~2주)

□ **대상기관 : 9개 지방의회**(광역 3개, 기초 6개)

○ **(선정기준)** 기관의 규모(의원수, 예산, 사무처직원 등), 예산낭비 사례 등 언론노출빈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9개 의회 선정

□ **주요 조사내용** : 최근 2년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무국외여행실태** 등

2.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및 편성기준

가. 현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행안부 부령) 준용

※ 이 규칙 적용대상은 자치단체의 장 등과 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하부기관 등에 대해서만 적용, 지방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적용대상 아님

【 주 요 내 용 】

①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 가급적 현금성 지출은 자제**
②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반영**(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 등)
③ 업무추진비는 **심야와 자택근처는 원칙적으로 사용불가(공무원에만 적용)**
④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는 주된 참석자와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재(접대비 실명제)
⑤ 간담회 접대비는 **1인당 4만원** 이하, 초과시 증빙서류 구비
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⑦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사용용도, 물품명,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 작성.관리**

나. 지방의회 주요경비 편성기준

○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통계목)로 나누어 편성.집행

※ 예산편성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 주요예산 편성 기준 >

<table>
<tr><th>예산과목</th><th>경비성격</th><th>기준액</th></tr>
<tr><td>의정운영공통경비</td><td>▪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회의.행사, 위탁교육 등</td><td>▪ 시.도 : 의원 1인당 6,100천원
-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책정 가능
▪ 기초의회 : 의원 1인당 4,800천원
-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책정 가능</td></tr>
<tr><td>기관운영업무추진비</td><td>▪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관련 제경비</td><td>(단위 : 천원/월)
<table>
<tr><th>구분</th><th>의장</th><th>부의장</th><th>상임위원장</th></tr>
<tr><td>서울경기</td><td>5,300</td><td>2,600</td><td>1,600</td></tr>
<tr><td>기타시도</td><td>4,200</td><td>2,100</td><td>1,300</td></tr>
<tr><td>기초의회</td><td colspan="3">기타 시.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함</td></tr>
</table></td></tr>
<tr><td>국외여비</td><td>▪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 연수여비</td><td>▪ 의장.부의장 : 2,500천원(연간)
▪ 의원 : 1,800천원(연간)
※부득이한 경우 연간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td></tr>
</table>

III

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

1.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2. 클린카드 위법·부당한 사용
3. 변칙적 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
4. 선심성 방만한 예산사용 등
5.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실태

Ⅲ 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

1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사용 빈발

○ **개인선물 구입, 가족.지인들과 개인적 만남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

【 주 요 사 례 】

- ○○의회 △△상임위원장은 자택근처 치킨집,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수시로 식사 등을 하면서 생활비처럼 사용
- ○○의회 의장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회 및 학교운영위 만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
- ○○의회 전 사무처(국) 간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휴일에 대학원 인근 식당에서 동기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사용하거나 또한 자신의 ○○동기들과 군부대 골프장 내 식당에서 법인카드 사용
- ○○의회 전 의장은 모친생일잔치, 처갓집 식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외연수시 면세점에서 지인 등에게 줄 선물(화장품, 양주)을 법인카드로 구입

나. 각종 사적관계 화환(분), 선물, 경조금 지출 빈발

○ **집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경조금, 화환,** 축하선물 제공, 집행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집행 사례 다수**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꽃집의 매출을 도와줄 목적으로 소속의원, 배우자 및 시청 간부들의 생일에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13회에 걸쳐 6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무국직원들에게 보낸 것처럼 하고 지인에게 보냄
- ○○의회는 동료의원 배우자 생일(5만원) 및 직원 전보시(20만원)에 부의장 부인의 지인이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하여 지급
- ○○의회 사무국장은 경조사비 집행한도 5만원을 초과(10만원)하여 집행한 사례 다수
- ○○의회 의장단은 동료의원의 배우자 생일, 학위취득, 부모, 장인장모 회갑·고희 등 집행범위를 벗어난 경조비를 예산에서 집행

2 클린카드 위법·부당한 사용

가. 유흥업소 등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위법하게 사용

○ 노래방, 유흥주점 등은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업종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일부 업종이 사용제한 업종**에서 **누락**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원은 전체사용의 15%를 주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 심지어 저녁식사 후 술접대까지 1일 3회 사용 사례도 있음
- ○○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호프집, 주점에서 수시로 클린카드를 사용(1,700만원)
- ○○의회 △△상임위원장 등은 동료의원 등과 유흥주점에서 755만원 사용
- ○○의회 △△상임위원장은 주점, 카페 등에서 270만원을 사용

< 보도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

시의회 의장, 시민혈세 고급 레스토랑 외식비 사용

2013년 01월 21일 (월) 00:01:42 편집국 webmaster@kimpo.com

시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시의회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가족과 지인의 고급 레스토랑 외식비로 부정사용된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을 감추기 위해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시의회 지출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 각종 제보의 확인 취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시의회 의장 외 3명이 2012.3.3(토) 18:33분경 프로방스 레스토랑(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2-1번지)에서 '타 시군 도시기본계획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급식비' 명목으로 264,500원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동안 본지 기사에 댓글로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 고지서 어제 왔는데 웃음이 납디다. 애들 용돈 주세요 하는것 같아서 허탈합니다.'
'재산세 냈다. 교육세 냈다. 부가세 냈다. 내가 세금 냈더니 그거 갈고 스파게티 먹고, 술 먹고, 접대하고, 쭈꾸미 먹고.. 그랬냐.. 에이....'

'도둑놈도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어찌 자식들을 외식 시키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허위지출증빙서 작성한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작성자든 공모자든 관련된 인물은 모두 처벌받아야죠...'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유흥주점 사용

2013년 03월 29일 (금) 08:38:52 편집국 webmaster@kimpo.com

시의회 의장이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시민혈세를 사용하고 다음날 해장국까지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시의회 의장 외 6명이 2012.1.2.(월) 21:03분경 유흥주점 석류(김포시 사우동 1064번지)에서 '2012년 의회 업무협의 간담회 급식비' 명목으로 125,000원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나.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클린카드 사용

○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심야(23시 이후)**시간이나 의정활동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적사용이 의심**

※ ○○의회 전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장은 휴일사용이 전체사용의 35%

< 주요기관 심야·휴일 사용현황 >

기관명	휴일사용건수	휴일사용금액	심야사용건수	심야사용금액
○○의회(2011~2012. 6)	1,344건	1억 2백만원	340건	2,044만원
○○의회(2010~2012.6)	937건	1억 4천만원	113건	1,400만원
○○의회(2010~2011)	482건	4,800만원	76건	552만원
○○의회(2011년)	58건	848만원	미확인	미확인
○○의회(2010~2012.6)	259건	1억 7천만원	“	“

○ 일부 광역시·도 의원들은 법인카드를 대부분 **자택근처** 등 지역구에서 사용함으로써 **사적사용 의혹** 및 지역구 관리로 인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의 개연성**도 존재

< 주요 광역시·도의원 거주지 사용현황 >

구분	전 체		거주지(지역구) 사용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비율
○○의회 △△상임위원장	229	16,163	194	13,188	85%
○○의회 △△상임위원장	137	22,313	116	18,783	85%
○○의회 △△상임위원장	346	18,226	273	12,444	79%
○○의회 △△당대표	376	47,718	223	27,826	60%

< 보도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

막나가는 의원님들…감옥서도 5백만원 월급에 수당까지

지방의회 일부의원들 도덕 불감증 백태, 대안은 없나

- 수감 생활중인 도의원 급여 명세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회의 한 도의원은 감옥에서 1년 넘게 의정비를 타고 있다.

또, "담배는 기호식품"이라며 혈세를 사용해 버젓이 담배를 구입하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는 그동안에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으나, 예산심의권을 쥔 의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능가하고 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대리비, 지역구 생색내기용 등으로 전용(?)

.의회 A위원회 B위원장은 지난해 9월 6일, 단 하루 동안 간담회를 핑계로 무려 10건이나 업무추진카드를 사용했다.

B위원장이 가장 먼저 결재한 금액은 28만2천700원으로 간담회를 위한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도의회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후 9건의 결제는 최소 1만3천 원에서 최고 9만 원 등으로 관행상 의원들의 귀가를 위한 대리비나 택시비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장단 및 상임위원들은 사회 통념상 개인 비용으로 분류되는 화환비, 경조사비 등도 혈세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구 간담회를 위한 식사비용 등 사적 용도에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장은 매월 530만 원, 부의장(2명) 260만 원, 상임위원장(11명) 및 예결위원장 160만 원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다.

◈ 혈세로 담배 공구, 공공청사는 흡연실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들이 혈세로 마련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특히 일부의원들은 금연 건물로 지정된 도의회 청사내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담배도 커피, 녹차 등과 같은 기호품인데 무엇이 문제냐"라며 "공공청사내에서의 흡연은 자제해야 하지만 빡빡한 의사일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항변했다.

도의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 1인당 연간 610만 원에 이르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식사비, 용품, 다과 등의 구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라면서도 "담배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의원들이 요구하면 구매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

다.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통제기능 부재

○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사전·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운영이 허술**하여 위법·부당 사용 반복

○ 집행대상에 대한 구체적 적시나 물품 수령인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품의서를 용인**

3 변칙적 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

가. 집행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회계처리

○ 과도한 접대비(1인당 한도 4만원)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 등의 방법으로 편법 집행하는 사례 만연**

【 주 요 사 례 】

- ○○의회는 국내 선진의회 비교시찰 시 식비로 146만원을 결제하면서 3명의 의원카드로 분할결제
- ○○의회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후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각각 79만원, 71만원을 동일카드로 2회 분할결제
- ○○의회 의장은 주민불편 현장 확인 후 저녁식사 비용으로 72만원을 결제하면서 동일카드로 2회 분할결제

나. 예산 목적외 사용 남발

○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집행기준을 무시한 무분별 예산 집행사례 다수

【 주 요 사 례 】

- ○○의회 목적외 집행사례
  - 총무담당관실은 직원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비로 식사비를 집행(128회, 1,942만원)
  - 사무국(처)장은 직원 명절 선물 구입을 위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747만원을 집행
  - 운영전문위원은 직원격려물품 구입, 퇴직공무원 격려 명목으로 시책추진비 155만원을 집행
- ○○의회는 해외자매결연 도시 방문단 환영 만찬비용 749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행사운영비에서 집행
- ○○의회 사무국(처)장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의원입원, 직원 자녀·장모·모친입원위로 등의 명목으로 190만원을 집행

다. 지출증빙서류 미구비 등 회계질서 문란

○ 조사대상 모든 의회에서 **구체적 집행목적.대상 등 지출품의 없이 접대성 경비 지출 만연**

※ 지출서류에 백지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는 경우도 다수

○ 모든 의회가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란에 “○○의회” 등 **비실명으로 서명**, 예산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명사용원칙의 취지를 훼손**

○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 고액물품을 **구체적 집행 대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 없이 제공하고 있어 사적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

※ 업무추진비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는 수령자, 지급일시,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됨

< 보도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

" 시의회, 업무추진비로 언론인 촌지까지 지급"

2회 걸쳐 '언론사 인터뷰 격려금' 지급... 참여자치연대 "명확한 규정 만들어야"

12.05.08 10:03 | 최종 업데이트 12.05.08 10:03 | 장재완(jjang153)

32	7.16	275,000	의원 배지 제작		카드	
33	7.16	300,000	언론사 인터뷰 격려금	○○○ 신문사	현금	
34	7.17	84,000	동료의원과 간담회		카드	
35	7.19	36,000	동료의원과 간담회		카드	
36	7.19	346,500	동료의원과 간담회		카드	
37	7.19	150,000	수박 구입 직원 격려		카드	
38	7.20	13,000	예산실 직원 격려		카드	
39	7.21	200,000	운전 원장근무 직원 격려		현금	
40	7.21	150,000	전 의회사무처 직원 격려		카드	
41	7.22	200,000	언론사 인터뷰 격려금	○○○ 신문사	현금	
42	7.22	47,500	언론관계자와 간담회		카드	
43	7.23	200,000	방송, 사진 현장 근무 직원 격려		현금	

▲ 시의회 의장실 업무추진비 중 언론인에게 '촌지' 성격의 현금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됐다.

"취재기자에게 촌지... 이런 관행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충격"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장 인터뷰 후 취재기자에게 촌지를 준 것을 보인다"며 "이런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행안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회의나 간담회에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게 되어있음에도 시의회는 간담회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과 '의정업무추진 간담회', 해당 식당명만 기록해 놓고, 어떤 목적과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기록해 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장실과 부의장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느냐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나 대상자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시행규칙은 집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에 강제할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행안부의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행안부 규칙에 맞추기 어렵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의회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선심성 방만한 예산 사용 등

가. 의회 예산 대부분을 식사비로 사용

○ 의회 예산의 대부분이 공적인 활동보다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들과의 단순 친목도모**, 빈번한 사무처직원 격려 등의 식사비로 **지출**

- 일부 의회는 업무추진비로도 부족하여 의정활동공통경비의 70% 이상을 식사비로 지출

- 회기 기간 중 중·석식 및 간식비로만 수천만원 사용

※ ○○의회는 회기 중 2010년(11회) 4,800만원, 2011년(8회) 5,800만원을 회기 중 식사비로 지출

< 일부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구분	○○의회			○○의회			○○의회		
	건	금액(천원)	비율(%)	건	금액(천원)	비율(%)	건	금액(천원)	비율(%)
계	4,812	711,632	100	1808	320,743	100	303	179,910	-
식사	3,956	556,232	78.1	1230	202,087	63.0	221	158,337	88.0
선물	120	53,420	7.51	276	682,218	21.3	-	-	-
현금 격려	431	25,707	3.61	102	286,300	8.9	27	4,950	3.0
경조사	91	14,313	2.01	117	895,000	2.8	-	-	-
기타	214	61,958	8.71	83	128,542	4.0	55	16,622	9.0

○ 일부 의회는 연말에 예산이 남게 되자 **1회에 수백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연일 사용하며 예산을 낭비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2011. 12. 21 직원격려 명목으로 전직 시의원이 운영하는 한우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12.29 업무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110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 다음날 숙취해소제까지 업무추진비로 집행

○ 심지어 **시책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출입기자들의 매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 ○○의회는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매일 출근하는 기자들의 접대가 관행화 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 중 평균 3,500만원(78%)을 기자 식사비로 지출

나. 선심성 현금격려 및 표창패 등 남발

○ 퇴직·전출 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출입기자 격려금, 국내외 연수시 각 상임위 간 **품앗이 격려금** 등 **선심성 현금 지출 빈발**

○ 지역구 학교 졸업식에 표창패를 남발하는 등 **예산을**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및 개인 이미지 제고** 용도로 사용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장, 부의장은 추석명절 출입기자 격려를 위하여 의장은 42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씩 총 520만원을 중복하여 집행
- ○○의회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시에 1,02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출
- ○○의회는 △△상임위 연수에 27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2년 6개월간 현금 격려금을 1억5천만원 지출
- ○○의회는 국내외 연수자에 대한 현금격려금으로 1,440만원을 지출
- ○○의회 의원 20명은 각각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초·중·고 졸업생 36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 매년 1,450만원을 지출

< 보도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

강원도민일보 2012년 02월 08일 (수) 02면 종합

업무추진비로 구두상품권 구입

감사원, 도의회 감사 결과 4년간 985만원 오용 확인

도의회가 최근 4년 동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도의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도는 최근 2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개인에게 영수증도 없이 거액의 봉투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최근 도를 포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직비리를 감사한 결과, 도의회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985만8000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매해 의원들끼리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만 2008년 11월 4일 의장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 16매를 256만원을 주고 구입해 의원 16명이 나눠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이후에도 지난해 1월 17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도의회 기관운영비 985만8000원을 갖고 동료의원 선물용으로 구두 상품권을 구매해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조의금과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6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한 대내외 협력활동 추진비 명목으로 최종 수요자 영수증도 없이 현금 1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10.2 X 12.4 cm

다. 의원·의회 직원의 복리증진에 예산과다 집행

○ 민원탐방 현장근무복, 체육행사 등산복·운동복 등 매년 **고가의 의류를 구입**

【 주 요 사 례 】

- ○○의회는 의원들의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2010년 630만원, 2011년 567만원, 2012년 630만원을 지출하는 등 벌당 30만이 넘는 골프웨어를 근무복으로 구입
- ○○의회는 의원들의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2011년 390만원, 2012년 890만원(벌당 52만원)을 집행하고, 2012년부터는 피복피 예산을 별도로 편성(1,400만원)

< 보도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

日報

2013년 01월 29일 (화)
05면 종합

의회 의정경비 540만원

아웃도어 상품권 구매 의원에 지급

의회가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 공적인 의정활동 경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 일부로, 방한복 구입을 위한 상품권을 구매해 의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illegible] 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는 지난달 20일, 의정운영 공통경비 가운데 540만 원을 '동절기 현장활동을 위한 방한 장비 및 방한복 구매' 예산으로 책정하고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 상품권 10만원 짜리 54매를 구입했다.

의회는 구입한 상품권을 구의원 12명에게 각 4매씩을, 의장 수행비서 2명에게는 각 3매씩을 지급했다.

의회 관계자는 "혹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설작업 등을 하는 의원들이 지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방한복 구입용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가족에게 줬고, 일부는 방한복이 아닌 면티 또는 바지 등 다른 의류를 구입하는 등 애초 상품권 지급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모 의원은 "방한복 구매를 위해 의회에서 상품권을 받긴 했지만, 이미 방한복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딸과 아내에게 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품권을 구입한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속칭 '업무추진비'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공청회 등의 행사 및 위탁교육 등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 구매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15.6 X 8.8 cm

○ 동료의원 및 사무처 직원에게 명절 선물 중복지급, 각종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집행 빈발**

【 주 요 사 례 】

- 2010년 ○○의회 의장단이 사무처 직원 설명절 선물비로 784만원, 추석명절 선물비로 904만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총 1,689만원을 명절선물비로 집행하고, 의장단이 선물비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본인 명의 명절선물 제공을 위하여 503만원을 집행
- ○○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장은 의원 및 사무국직원, 출입기자들 명절 선물비로 연간 1,646만원을 지출
- ○○의회 의장단은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2012년 설명절 선물비로 451만원을 중복해서 집행
- ○○의회는 지역사회 문화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공연 티켓을 예산으로 구매(377만원)

< 보도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

www.joseilbo.com 조세일보

지방의회 예산, 의원님 쌈짓돈(?)…"운영비로 상품권 선물"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2년 02월 07일 15:00 / 수정 : 2012년 02월 07일 15:00

일부 지방의회에서 주민 세금으로 마련한 운영비로 상당액의 상품권을 구입, 의원들에게 연말·명절 선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경비로만 사용 가능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의원 선물 구입 대금으로 불법 전용했다.

의회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2147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 구의원들에게 연말과 명절 때마다 선물했다.

의회도 지난 2008년 이후 3년 동안 의장단활동비 12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총 9명의 의원들에게 연 4회 정액으로 지급했다.

의회도 지난해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85만8000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등을 구입해 도의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의회도 같은 기간 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58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 총 19차례에 걸쳐 의원들에서 설·추석 명절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시 개인별로 선물했다.

군 및 군 의회에서도 각각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1320만원과 1200만원씩 구입해 군의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지방의회 예산 집행이 적발된 각 자치단체장에게 의원 선물용 상품권 구입비용을 회수·보전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5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실태

가. 불요불급한 관광성 공무국외여행 빈발

○ 목적은 의정활동을 위한 국외여행이지만 각종 **유적지 견학,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 연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정이 대부분

- **1~2개 기관방문**으로 공식일정을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 실시

【 주 요 사 례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역의회 의장 8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외연수' 목적으로 이집트와 터키 연수중 낙타투어, 나일강 크루즈, 각종 신전 관광 등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에 소요
- ○○의회 의원 8명은 의회제도 선진산업시설 연수를 위하여 미국(11일간)을 방문하면서 시청방문 2회를 제외하고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자이언 캐년, 화산 관광 등 관광에 대부분의 시간소요
- ○○의회 △△위원회와 △△위원회는 동일한 일정으로 각각 사회복지분야 벤치마킹 및 경전철 운영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연수를 실시하면서 타마신사 축제, 가와고에의 축제,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등 두 위원회가 동일한 지역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여 합류 후 관광실시

< 보도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

한국일보 2013년 03월 28일 (목) 12B면 지역

"해외서 마사지도 좀…" 지방의회 몰염치 외유 봇물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지방의회가 경기 불황과 북한의 도발 위협 등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를 통해 모범사례를 접목,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일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관광 등으로 짜여 주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8명이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난다. 방문지는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등이다. 의원들은 공용자전거시스템을 살펴보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정책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1인당 여행경비가 300만원에 이르는 연수는 2~3개의 현지 공식 일정을 제외하면 여행사의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들은 프랑스에서 유람선을 탑승하는 것을 비롯해 에펠탑 전망대,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등 관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2박3일 일정으로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탑승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 및 프랑크푸르트 시내 관광도 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통해 많은 지식을 담아와 국내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변명했다.

군의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장애인·노인복지 시설과 친환경 농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정의 대부분이 온천관광으로 구성돼 빈축을 사고 있다. 홍성군의회 의원 8명은 지난 12일부터 5박7일 동안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베트남 화훼단지와 싱가포르 친환경 물 처리시설, 도시계획관을 둘러 본 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관광을 즐겼다. 때문에 사실상 주민혈세로 관광을 다녀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 18명은 27일 총 예산 3,900만원을 들여 팔리핀 해변으로 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31일까지 필리핀의 유명 바다 휴양지인 보라카이를 돌아볼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2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일정 상당부분이 섬 일주, 세일링보트 탑승, 조랑말 트레킹, 함제 진주 마사지 등 일반 관광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뜨겁다.

시민들은 비다가 없는 도가 바다 휴양지 관광인프라 개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발상부터 어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8명도 지난 24일 베트남으로 5박6일 일정 연수를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의 연수 일정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하롱베이와 호치민박물관 견학, 베트남전 땅굴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현대건설과 남광토건 공사 현장 방문 일정을 슬그머니 추가했다. 의원들이 방문키로 한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와 따호파이 신도시 건설현장은 소요시간이 2시간에 불과해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주민 김모(43)씨는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한데 의원들은 해외관광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혈세를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하는 기초의원들의 발상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유럽 나들이
도의회 하롱베이행
시군의회 의장단협
해변 휴양지 보라카이로

한덕동기자 ddhan@hk.co.kr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박은성기자 esp7@hk.co.kr
26.1 X 12.4 cm

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및 사후 검증장치 부재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재결 없이 **임의로 증원 또는 대상자 변경**

○ 공무국외여행 **사전계획**과 **실제 국외여행 내용이 다른 사례**가 있어도, 사후 검증 부재

○ 대부분의 의회가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 사례 다수, 또한 **연수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효과도 미미**

【 주 요 사 례 】

▪ ○○의회 △△상임위원회는 일본연수를 실시하면서 의원 10명, 보조직원 2명 등 12명을 의결하였으나, 임의로 사진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직원으로 교체

▪○○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은 인도의 정신문화 자료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7일간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출장기간은 13일간 실시하고 지인을 동행하여 실제 일정도 교회 특별 찬양회 참석, 자신의 전공분야인 음악 강의 등 사적 용무 출장으로 활용. 또한 각 상임위 위원장들로부터 격려금 40만원씩을 지원받음

다.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

○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 동행 후 향응 접대 및 로비 의혹**

【 주 요 사 례 】

▪○○의회 의원 12명은 ○○시와 우호협력강화를 위한 해외 출장을 실시하면서 방문자 명단에 없는 지역 농업회사법인 이사와 동행하여 출장일정 중 향응 제공을 받은 의혹이 있음.

IV 개선방안 및 협조사항

1. 개선방안(총괄) 및 협조사항

2. 개선방안 세부내용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강화

라. 공무국외 여행 공개 의무화

마.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Ⅳ 개선방안 및 협조사항

1 개선방안(총괄) 및 협조사항

○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조치기한 : ‘13. 8월말

- 개선안 조치 후 **9월말까지 추진결과를 권익위로 통보**

※ 청렴도 측정은 권익위 청렴도 측정 일정에 따라 별도 진행

< 개선방안(총괄) >

추 진 과 제	관련규정	소관기관
□ **「지방의회의원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전체 지방의회
□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①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②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③ 자율적 사후 통제 강화 방안 강구 ④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참조(붙임1)	자체규칙	전체 지방의회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강화** ① 지방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정(삭감) ②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분화	자체계획 등	전체 지방의회
□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전체 지방의회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법	47개 지방의회, 국민권익 위원회

○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용은 환수 등의 조치 실시

< 우수사례 : 지방의회 예산낭비 관련 자체 확인·점검 >

조윤숙시의원,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강력 문제 제기

2013년 01월 07일 (월) 00:47:12 편집국 ds webmaster@kimpo.com

조윤숙시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의회사무과장이 잘못을 인정했음이 밝혀졌다.
조윤숙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환수요구' 발표를 보고 우리 김포시의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바램을 가지고 지출증빙서를 살펴보게 됐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 조윤숙 네. 지금요, 아직까지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술집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가 의장·부의장을 잘 보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데 제가 민선 4기부터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해 왔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이것을 보면서 어느 부서에도 집행부의 업무추진비의 "업"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답변만 제가 들을게요.
○ 의회사무과장 김진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지겨 웠지만 앞으로는, 지금 지급된 거에 대한 거는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윤숙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진억 네.

○ 「지방의회의원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노력 및 개선방안 수용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실태조사 실시

2 개선방안 세부내용

가. 「지방의회의원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 금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지방의원의 예산낭비사례 등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의 부재로 발생**

- '11. 2월 「지방의원의원 행동강령」이 제정·시행 되었음에도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 노력은 여전히 미흡**('13.5. 17개 의회 제정)

※ 제5기('06.7~'10.6)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중 사법처리('12.1월, 연합뉴스), 국민의 73.9%는 지방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11.5월 권익위 조사)

➡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원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이 시급**

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참조[붙임1]

①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 의회 예산의 대부분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대상자에 대한 경조금지출, 격려성 현금지출, 각종 동호회 회비 등으로 지출

○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을 허용,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선심성 현금지출은 사용을 제한**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분야 >

① 사적사용, ② 언론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③ 친목회, 각종 동호회 회비, ④ 의원 및 공무원 국내외 해외연수 격려금, ⑤ 동료의원 상호간 격려성 식사제공, ⑥ 집행 범위를 벗어난 경조사비

②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 공개** 추진

- **(공개주기)** 의회의 특수성(회기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분기
- **(공개대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 **(공개내역)** 구체적 집행일시·목적·대상·금액을 반드시 포함

③ 자율적 사후 통제 강화 방안 강구

○ 지방의회 및 의원은 비리로 인한 형사책임 또는 주민소환 외에는 **내·외부 통제장치가 없는 사각지대**

○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내·외부 감시 의무화**

-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검 실시**

④ 위법·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재 강화

○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사용금지 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및 홈페이지 공개 등 엄격한 제재조치** 방안마련

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 제정 및 의회비 집행 강화

① 지방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제외하고는 직무상의 행위라도 **선거구민 등에 대한 상시기부행위(예산집행행위를 포함)를 제한**

- 같은법 제112조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

○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장 명의의 직무상 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데 비해,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지나치게 높게 편성**되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위법·부당한 사용이 빈발

※ 현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규칙을 준용하여 지방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임

➡ 위법·부당한 사용금지 및 선출직 공직자의 상시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조정(삭감)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

②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분화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공청회, 세미나, 각종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

○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식사비, 경조사비, 격려금 지출 등의 **제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

※ 일부의회는 의정활동공통경비의 70% 이상을 식사비로 지출

➡ **항목별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③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 업무추진비 격려성 현금지출 강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심야시간,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의회비 업무추진비(205-05,06) 지침 **개정**(**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12.12월 개정완료**, 행정안전부)

<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① 격려금 지출은 현금성 지출인 점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②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공개내용**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여행목적,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가, 방문기관, 여행경비 및 경비 부담기관, 세부 여행일정 등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여행경비 증빙자료 등

○ **공개장소 : 홈페이지** 등

마.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냉소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은 미흡,** 별도의 **반부패 대책 추진 필요**

○ 평가대상 : **광역의회**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의회** 등 **총 47개** 지방의회(2013년)

V

붙 임 자 료

1.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3.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계획(안)

1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1. 제정배경

○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03년 제정)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제기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 추진

2. 추진경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것임

-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09. 7. ~ 10.), 국민인식도 조사('09. 11.)
  ※ 제정 필요성 : 일반국민(64.3%), 지방의원(52.0%), 공무원(64.0%)

- 공청회('09. 12. 15.) 및 관계기관 협의('10. 1. ~ 4.)
  ※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의회 등 556개 기관

- 행정규제 심사('10. 6. 4.) 및 법제처 법령안 심사('10. 7. 23.)

- 국무회의 의결('10. 10. 26.)

- 대통령령 제정.시행('10. 11. 2. 제정 · '11. 2. 3. 시행)

3.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제2조)

○ 지방의회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 (제4조)

○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 (제7조)

○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 (제19조)

○ 그 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제15조), 성희롱 금지 조항 (제18조) 등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을 규정**

< 15개 행위기준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4)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5) ▪ 인사 청탁 등의 금지(§.6)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	▪ 이권 개입 등의 금지(§.8)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9)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10)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1) ▪ 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12)	▪ 국내외 활동 제한 등(§.13)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14) ▪ 영리행위의 신고(§.15) ▪ 금전 거래 등 제한(§.16)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성희롱 금지(§.18)

4.‘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조례 제정 필요성

○ 지방의회의원은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통보와 함께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음

○ 그러나 의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일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의회별 제정 위임 사항** 〉
직무관련자의 범위(제2조), 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1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7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제22조) 등

○ 특히,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 접수 시 **의장은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회별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적용 및 운영이 곤란

○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회의원이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에서도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

5.‘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제정 현황 : 17개 의회 (‘13. 5. 9. 현재)

○ ‘11년도 : 진천군, 임실군,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연천군, 광주 남구, 계양구, 태안군, 여수시

○ ‘12년도 : 평택시, 옥천군, 함평군

○ ‘13년도 : 천안시, 진안군, 울산북구, 남원시

Ⅱ '13년도 주요추진과제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제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구성·운영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구축
□ 지방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 준수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제정

○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 필요**

- 의회별로 ▲ 직무관련자의 범위, ▲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제한 기준, ▲ 금품등 수수 상한액, ▲ 경조금품 수수 상한액 등을 반영

○ 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준수는 단순한 ‘의회 재량사항’이 아닌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시 조례 제정 의회 소속 지자체에 **‘운영지원 노력도 점수(5점)’ 부여** (‘13. 10. 31. 이전 통보 限)

⇒ **47개 지방의회 대상 〈청렴도 평가〉에 실적 반영**

※ 권익위는 지방의회 및 지자체 협조 요청 시, **의원간담회 자료 제공, 맞춤형 방문 컨설팅** 등 제공함으로써 조례 제정 지원 예정으로, 의회 담당자는 권익위 담당자(02-360-6828, 박정만 조사관)와 조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해 수시 연락 요망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를 위해 반드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제19조)되어 있으므로,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사항**임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시 조례 제정 의회 소속 지자체에 **‘운영지원 노력도 점수(5점)’ 부여** (‘13. 10. 31. 이전 통보 限)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구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의원은 국내외 활동 시 외부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예외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현재 118개 의회 공개)

○ ‘2013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시 점검계획에 반영하여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실태 조사’등에 활용 예정

⇒ 의회 홈페이지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구축 후 권익위 통보 요망 (‘13. 6. 21. 이전 통보)

□ 지방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 준수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지방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소관 상임위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함

○ 이는 지방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회피규정**으로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지방의원에게 **청탁·부정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

○ 권익위 조사결과,
- 지방의원 1인당 약 3.5개의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 이 중 68.2%가 소속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 중으로,
- 대부분인 93.1%의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 권고사항
-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의 심의·의결 회피 제도 사전 안내
-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운영
-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 제한

※ 향 후 권익위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회 출마자 전원에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을 약속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 예정임.

Ⅲ 주요 조문 설명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취지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예산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불공정 사례를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동일한 규정

□ 내용 해설

○ **예산**
- 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모든 공공 예산

○ **목적 외 사용**
- 예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

○ **재산상 손해**
-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공금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일보, '10년 7월)

○ △△시의회 B의원은 허위준공검사서로 도의원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일보, '10년 7월)

○ △△구의회 의원 3명은 2007년 3박4일간 일본 연수를 다녀왔으면서도 5박6일 일정의 계획서를 올려 1인당 62만원의 해외연수비를 과다 수령(△△일보, '09년 7월)

○ △△구의회 C위원장은 가족 식사비 등 사적인 용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D의원은 주점 유흥비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일보, '08년 11월)

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규정 취지

○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방지

○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위원인 의원에게 금품등을 건네며 청탁하는 부정 소지 차단

□ 내용 해설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제7조제1호)**
- 개별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상임위원회별 소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심의·의결**
- 제7조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심의·의결인지 또는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

□ 관련 사례

○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A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위원회 소속 B의원은 △△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신문, '09년 5월)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C의원은 2002년 도시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신문, '08년 9월)

다. 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3조)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규정 취지

○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 외부 기관·단체가 로비 목적으로 의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 의원이 금전 제공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 내용 해설

○ **외부 기관·단체**: 해당 의원의 소속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시민단체 등도 포함

○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만 제한**
- 개인 여행, 가족 여행 등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음
- 직무와 무관하게 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라면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됨

○ **사전 승인, 사후 보고서 제출**
- 의장은 사전 승인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상황 공개**
- 의장은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u>'국내외 활동 공개 게시판' 구축</u>

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 규정 취지

○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편법 금품 수수 행위 방지 및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와 동일한 규정

□ 내용 해설

○ **소속 직원(제1항제2호)**: 의회 사무처(국/과) 소속 직원
-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시·군·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1항제2호의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음

○ **내부통신망(제1항제3호)**
-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
- 의회 홈페이지 등 내부통신망이 아닌 곳에 의원 경조사 게시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과 직원에게만 별도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외부 제3자의 게시판 접근 차단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5만원 이내로 규정·운영

※ 의장은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가액을 정하고 이를 의회별 행동강령에 규정

□ 질의 회신

Q.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도·시·군·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 직원이 동일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경우
A. 해당 인트라넷 경조사 게시판에 의원 경조사를 게재할 경우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는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 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게시판을 생성하거나 사내 메시지 등 다른 방법 이용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와 관련하여, ① 의원이 되기 전 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지, ②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가능한지, ③ 구청 직원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결혼식장을 찾아온 경우에 추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답례의 글을 띄우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A. 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를 통지할 때 해당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면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 여부는 경조사 통지자(의회 소속 직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의원)를 기준으로 판단.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있음(위반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 ③ 해당 기관의 내부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율 사항이 아님

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규정 취지

○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운영 자문기구를 둠으로써 의원간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에 의한 왜곡·편파 운영 방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관계

○ 행강운영 자문위는 의장의 행동강령 운영부담을 경감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1/2 이상으로 구성됨

○ 행강운영 자문위는 윤리특위의 前단계로,
행동강령 위반사건의 처리에 있어 행강운영 자문위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윤리특위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징계를 결정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회명)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회명)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의회명)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의장은 필요시 "직무관련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회명)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장은 필요시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의장은 필요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제공받는 금품등”을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 의장은 필요시 의원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을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장은 필요시 자문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

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사무국, 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

·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Ⅴ 참고자료

1.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현황

2. ‘국내외 활동 공개 게시판’ 구축 현황

3.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4.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5.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통합 사례 소개

참고 1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현황

(단위 : 개)

		제정완료	조례 제정 추진중	조례 제정계획 없음
총계(244)		17	61	166
광역의회		없음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소계(17)		0	4	13
기초의회	서울특별시(25)		광진구,구로구,동작구,송파구,은평구,중랑구	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
	부산광역시(16)		사하구	강서구,금정구,기장군,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서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대구광역시(8)		달서구,동구,중구	남구,달성군,북구,서구,수성구
	인천광역시(10)	계양구	강화군,남구,남동구,연수구	동구,부평구,서구,옹진군,중구
	광주광역시(5)	남구	광산구	동구,북구,서구
	대전광역시(5)		서구	대덕구,동구,유성구,중구
	울산광역시(5)	북구	-	남구,동구,울주군,중구,
	경기도(31)	연천군 평택시	고양시,광주시,수원시,안양시,양주시,용인시,포천시	가평군,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양평군,여주군,오산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하남시,화성시
	강원도(18)		양양군,영월군,원주시,철원군	강릉시,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12)	진천군 옥천군	단양군	괴산군,보은군,영동군,음성군,제천시,증평군,청원군,청주시,충주시
	충청남도(15)	태안군 천안시	예산군,홍성군	계룡시,공주시,금산군,논산시,당진시,보령시,부여군,서산시,서천군,아산시,청양군
	전라북도(14)	임실군 진안군 남원시	고창군,김제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익산시	군산시,완주군,장수군,전주시,정읍시
	전라남도(22)	여수시 함평군*	고흥군,담양군,목포시,무안군,순천시,신안군,해남군	강진군,곡성군,광양시,구례군,나주시,보성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화순군
	경상북도(23)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경산시,군위군,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양군,영천시,예천군,포항시	경주시,고령군,구미시,봉화군,성주군,영덕군,영주시,의성군,청송군,칠곡군
	경상남도(18)		고성군,산청군,창녕군,함안군	거제시,거창군,김해시,남해군,밀양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통합창원시,하동군,함양군,합천군
소계(227)		17	57	153

※ 함평군 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만 제정

참고 2 ‘국내외 활동 공개 게시판’ 구축 현황

< 공개 게시판 구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

❍ 지방의회의원들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함

❍ **의장은 외부지원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한 의원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공개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공개 게시판’ 구축의회 (118개)

○ 광역의회(9개) : 서울,대구,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

○ 기초의회(109개)

지역 (기초의회수)	구축 의회수	시스템 구축 의회
서울(25)	9	강남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16)	8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진구, 사하구, 서구
대구(8)	5	달성군,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10)	3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광주(5)	3	광산구, 동구, 서구
대전(5)	2	서구, 유성구
울산(5)	1	중구
경기(31)	15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화성시
강원(18)	9	강릉시,동해시,속초시,원주시,철원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횡성군
충북(12)	8	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청원군
충남(15)	5	금산군, 당진시,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전북(14)	6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전주시
전남(22)	15	강진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신안군,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경북(23)	13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18)	7	거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참고 3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구 분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통사항	이권개입금지	-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좌 동
	예 산 목 적 외 사용 금지	-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좌 동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좌 동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좌 동
	외부강의등 신고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 신고	좌 동
	금전거래등 제한	-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거래 금지	좌 동
	경조사 통지·경조금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 경조금품 5만원 초과 수수 금지	좌 동
개정사항	정 의	- 직무관련자 : 소관업무 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 : 이익,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 **직무관련자** : 의안심사 등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	- 자신의 이해 또는 4촌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	- **안건심의 등 활동에 본인 및 4촌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인사청탁금지	- 자신인사를 타인에게 청탁 금지 - 다른 공무원의 인사 개입 금지	- 직무관련자 인사 개입 금지
	공 용 물 사 적 사용 금지	- 공용물 사적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각종경비, 시설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 금지 추가
	위반행위신고 및 확인	- 위반시 소속기관장, 권익위에 신고	- **사건처리 방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 기관별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	-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추가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설치**	-	- 의장의 자문에 응함 - 민간위원(1/2이상) 구성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	- **직무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제한**
	의원 간 금품 수수 금지	-	- 직무관련 의원간 금품수수 금지
	영리행위신고	-	- 직무관련 영리행위 신고
	국내외활동 제한	-	-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활동 제한
	성희롱 금지	-	- 의원간,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제외사항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지시	-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
	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차별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신고	-
	알선·청탁금지	-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공직자 소개 금지	-
	행동강령책임관	- 4급이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참고 4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비교

구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성격	◦「지방자치법」 제38조	◦「권익위법」 제7조.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성격	추상적 윤리기준	구체적 행동기준
적용기관	306개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집행기관, 교육감)	244개 지방의회 (기초 227, 광역 17)
운영주체	해당 지방의회 (윤리특별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해당 지방의회의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위반시 징계	「지방자치법」 제86-89조	좌 동
제정	의무	재량
내용 비교	<u>의회별로 상이</u> <윤리강령> - 보통 5개 ○ 인격.식견함양, 예절지킴, 품위유지, 의사대변 ○ 공익우선정신, 성실직무수행 ○ 부정이득 도모.부당영향력 행사 금지, 청렴.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 충분한 토론, 적법절차 준수 ○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게 책임 <윤리실천규범> - 보통 8개 ○ 품위유지 ○ 청렴의무, 공정의심행동 금지 ○ 직권남용 금지, 지위남용, 부당영향력 행사 및 대가수수 금지 ○ 직무 또는 직위관련 <u>금품 등 취득 금지</u> ○ 과도한 <u>사례금 수수금지</u>(신고의무 없음) ○ 직접적 이해관계 사안 사전소명 <u>회피의무</u> ○ 재산신고 및 겸직신고 ○ <u>국외활동 성실 보고</u> ※ 그 외, 공적기밀 누설 금지, <u>영리행위 제한</u> 등	<u>총 15개</u> <공정한 직무수행 4개> ○ <u>이해관계 직무의 회피</u>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직무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 등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5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u>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u> ○ 의원간 금품등 수수행위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6개> ○ <u>국내외 활동 제한 등</u> ○ <u>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u> ○ <u>영리행위의 신고</u> ○ 금전거래 등 제한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 성희롱 금지

※ **<윤리강령>**의 경우, 그 내용이 <행동강령>에 비해 **너무 추상적**이며, **<윤리실천규범>은** 금품 등 취득 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회피의무, 국외활동 성실보고, 영리행위 제한 등의 **일부 조문이 <행동강령>과 비슷한 내용이나 구체적 행위기준 없이 단순히 ‘성실히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언적 규범으로 구성**

참고 5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통합 사례 소개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조례)은 ○○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시의회 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시의회 위원회 조례」및「○○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3장 행동강령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물이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9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30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의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7**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강령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4조 관련)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

[별표 2]

○○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 관련)

○○시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계획(안)

< 기본 방향 >

◇ **광역의회** 및 **주요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실시

◇ 지자체 직원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설문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합**하여 **특화된 평가모형 구축**

□ 평가의 필요성

○ 지방의회의원의 **부패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냉소적**으로 **인식**

- 제5기('06.7~'10.6)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 중 사법처리('12.1월 연합뉴스)
- 우리 국민 73.9%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 ('11.5월 권익위 인식도 조사)

○ **이권개입** 등 부패발생이 **우려**됨에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부족**

- 지방의회의원의 **93.1%**가 **소속 상임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위원회에 참여**('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의회는 전체의 6.5%인 17개에 불과('13.5월 현재)

□ 평가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평가대상 : 총 47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50만 이상**[1] **기초의회**(24개)

○ **시·도 권역별**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를 평가대상에 **포함**(6개)

※ 부산 해운대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울산 남구의회, 강원도 원주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

□ 평가 구성체계(안)

○ 전문가·이해관계자 대상 **청렴수준 설문평가** 점수와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평가** 점수를 통합

- 설문평가에는 **공무원**, **정책고객**[2],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여부,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

○ **부패·비위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권익위 점검 및 실태조사 **적발**사항 등은 **감점**으로 **반영**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구성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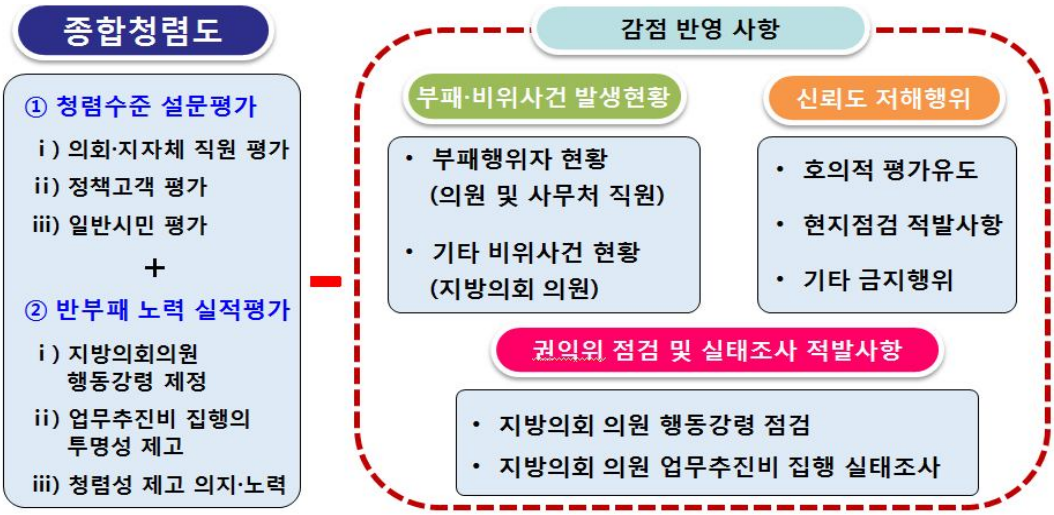

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2.12월) 기준
2)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방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전문가·이해관계자를 의미

□ 설문평가 항목(안)

○ 크게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로 구분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인식**과 **청렴문화** 및 **부패방지 제도** 수준을 설문

○ 지방의회의원과의 **접촉 가능성** 및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 참여자별로 **설문항목 차별화**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모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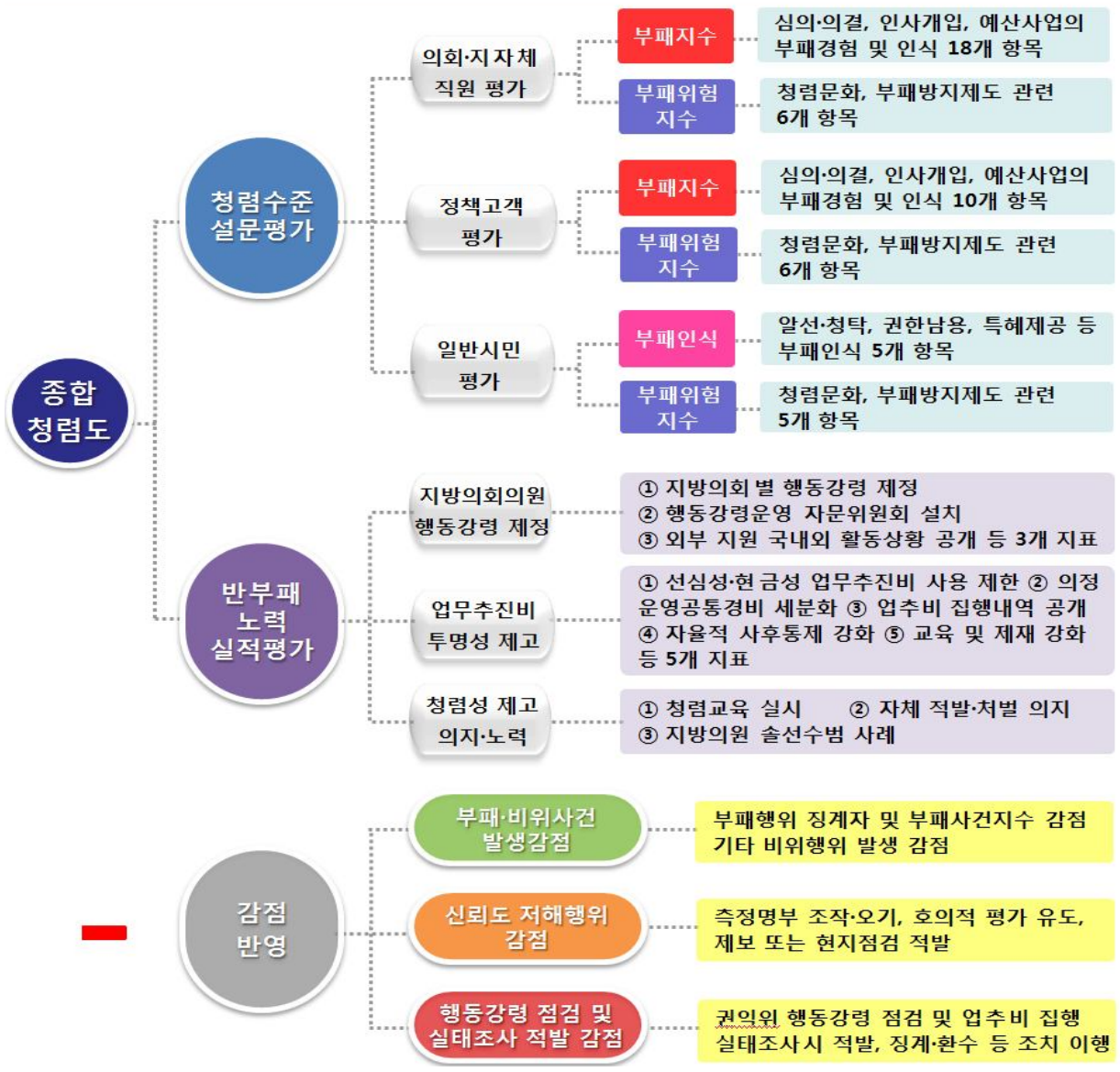

* 설문항목 및 평가지표별 세부 가중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후 결정

□ 실적평가 지표(안)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12.7월 배포)에 따라 **3개 세부지표**로 구성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에 의해 **5개 세부지표**로 구성

○ 기타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의지·노력**을 **3개 세부지표**로 구성

< 실적평가 지표(안) >

평가영역	평가지표	비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①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②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③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①선심성·현금성 업추비 사용 제한	
	②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분화	
	③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④자율적 사후통제 강화방안 강구	
	⑤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청렴성 제고 의지.노력	①청렴교육 실시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
	②자체 적발.처벌 의지	비위행위 자체 적발률 및 실제 징계율
	③지방의원 솔선수범사례	

□ 감점반영 항목(안)

① **부패·비위사건 발생** 감점[3)]

- **부패행위자 현황** 감점

※ 외부 사정기관 등의 적발 및 언론보도로 드러난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처 직원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감점

- **기타 비위행위자 현황** 감점

※ 기타 부패행위 외의 지방의회의원 **비위행위**도 점수화하여 감점

②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감점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 변경, 무자격자 기재, 오기 등에 대해서는 **명부 조작·오기 건수** 및 **심각성**에 따라 **차등 감점**

- 설문평가 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수에 비례**하여 **감점** 적용

- **제보** 또는 **현지점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점폭 결정

③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 및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적발** 감점

- 행동강령 점검 및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시 **위법·부당행위 적발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감점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환수 등 **보완조치 이행 여부**도 감점으로 반영

3)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관행성 및 다수관련성, 부정적 영향력 등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감점

< 설문 참여자별 설문항목(안) >

평가영역		설문항목			설문 참여자		
					지자체·의회 직원	정책 고객	일반 시민
부패 지수	심의. 의결	인식	알선·청탁, 압력 행사		○	○	○
			권한남용		○	○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	○	○
			이해관계 회피		○	○	
			연고·친분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	○
		경험	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		
			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경험		○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경험		○	○	
	인사 개입	인식	인사 청탁·개입 인식		○	○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		○	○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예산 사업	인식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인식		○	○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인식		○	○	○
		경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		○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직접경험		○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간접경험		○		
부패 위험 지수	청렴 문화	외유성 출장			○	○	○
		특혜 제공 요구			○	○	
		복지부동 및 책임회피·전가			○	○	○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	○	○
	부패방지 제도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	○	○
		자체 적발.처벌.감시·통제 기능 효과성			○	○	○
참 고		비민주적 의회 운영			○	○	○
		전반적인 신뢰수준			○	○	○

* 평가영역 및 설문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후 결정

□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 사항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모형(안)에 대한 **의견수렴**(5월)

- 설문항목, 실적평가 지표, 감점 방안 등 **평가모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평가모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24(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할 것 (별도의 제출서식 없음)

※ 청렴도 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

○ '13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7월)

- 설문평가 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제출 기준** 등 안내

○ 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 제출**(7월)

- 평가대상 지방의회별 **내부직원 명부**, **징계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및 서식은 향후 통보될 「'13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참고할 것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8~11월)

- 설문평가는 **전화, E-mail, 방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

- 부패방지 노력 실적지표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평가 기간 중 **현지점검 병행**

○ **평가결과 발표**(12월)

- 평가결과 종합 분석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

붙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47개)

구 분	기 관 명	
광역의회 (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기초의회(30개)	서울	노원구 의회
		강서구 의회
		관악구 의회
		강남구 의회
		송파구 의회
		은평구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
	대구	달서구 의회
	광주	북구 의회 *
	인천	부평구 의회
		남동구 의회
	대전	서구 의회 *
	울산	남구 의회 *
	경기	수원시 의회
		성남시 의회
		안양시 의회
		부천시 의회
		안산시 의회
		고양시 의회
		남양주시 의회
		용인시 의회
		화성시 의회
	강원	원주시 의회 *
	충북	청주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
	경북	포항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김해시 의회

* 인구 5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

참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와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평가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

□ 구성체계 (종합청렴도 = 설문평가점수 - 감점지표)

○ 설문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로 구성

- **외부청렴도** :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내부고객 입장에서 해당기관 청렴도를 평가
- **정책고객평가** :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을 평가

○ 감점지표는 부패사건 발생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으로 구성

- **부패사건 발생감점** : 외부기관에 부패행위가 적발된 경우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평가 관련자료 조작, 호의적 평가 유도, 현지점검.제보에 의한 금지행위 적발시 감점

□ 설문평가방법

○ **외부청렴도** : 최근 1년간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 **내부청렴도** :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 **온라인**(E-mail) **조사**

○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이해관계자 대상 **전화** 및 **온라인**(E-mail) **조사**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현황]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국공립 대학
		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662	39	16	223	16	155	178	35

□ 평가모형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모형(201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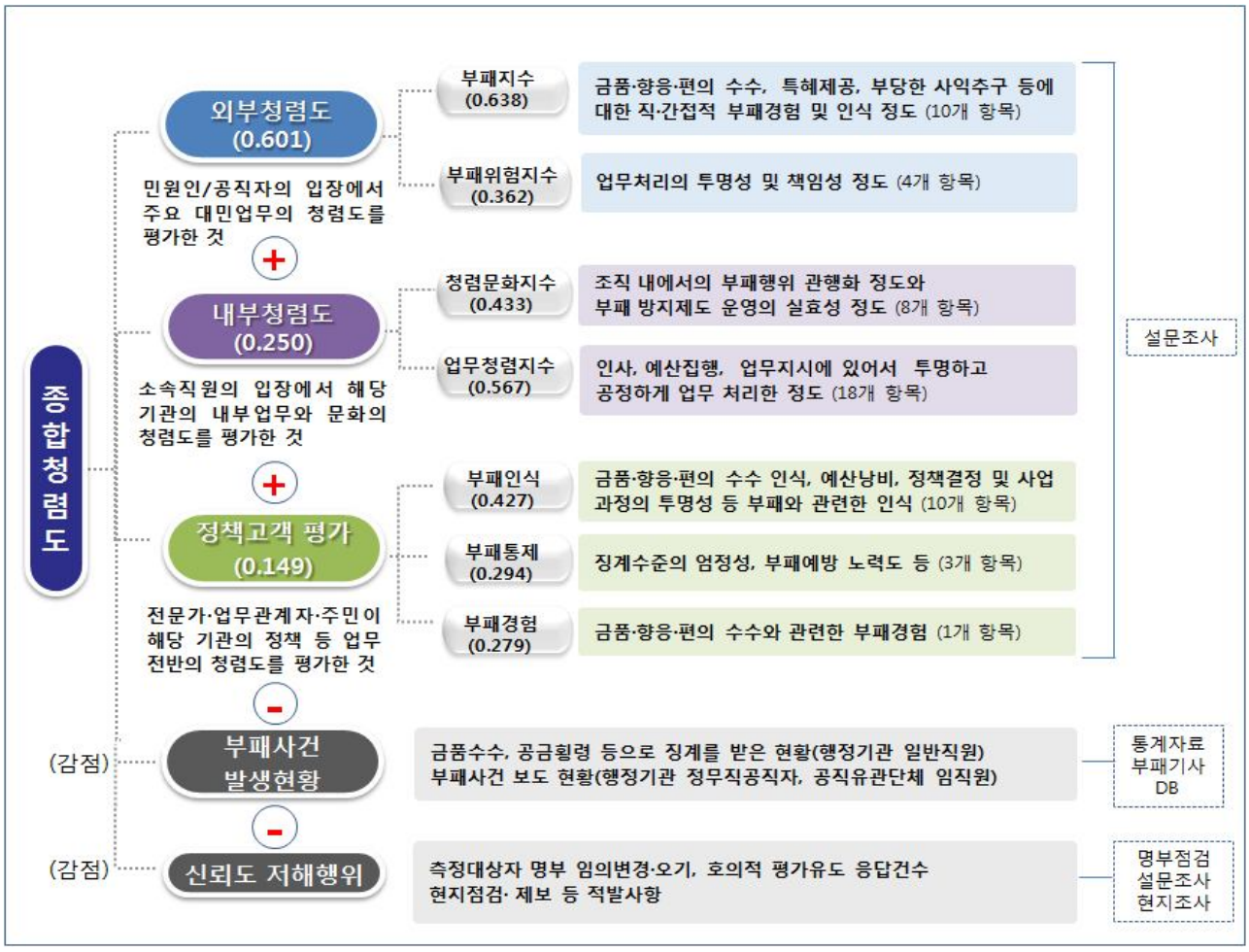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유형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합산

□ 결과 활용

○ 기관별 평가결과 **분석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배포**

- 취약분야 점검,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유도**

○ **지방자치단체 평가**(안전행정부), **시·도교육청 평가**(교육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기획재정부) 등에 반영

□ 성과

○ 청렴도 평가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반부패 노력**이 **집중**되고 금품·접대 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청렴도 평가업무의 금품·향응 제공률 변화 추이(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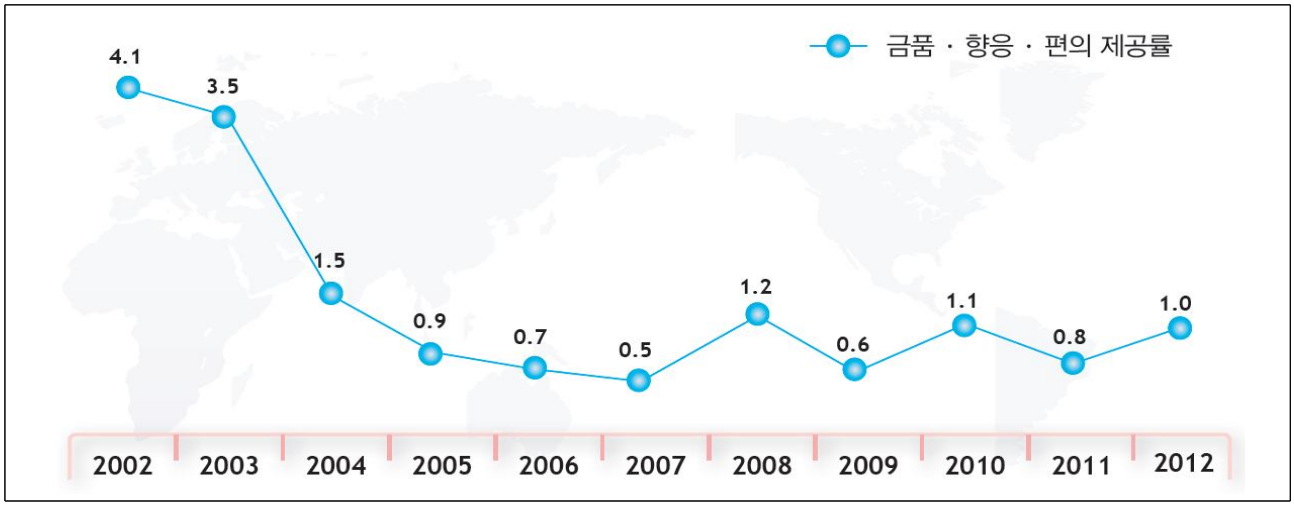

○ 20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 부패예방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신뢰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2012년 UN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대상 수상

○ **개도국 반부패 기술전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

- 인도네시아(2007), 부탄(2009), 몽골(2010), 태국(2010), 말레이시아(2011)와 MOU를 체결하여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전수

Ⅵ

참 고 자 료

1. 분야별 업무담당자

2.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관련 참고 법령 등

참고 1 분야별 업무담당자

◇ **주요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서 명	직급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심사기획과	5급	김지식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360-6604	360-3550
행동강령과	4급	손영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360-6822	360-3554
	6급	박정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360-6828	
청렴조사 평가과	5급	이덕희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360-6546	360-3547
	5급	정윤정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60-6544	

참고 2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관련 참고 법령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4. 삭제 <2004.3.12>
5. 삭제 <2004.3.12>
6. 삭제 <2004.3.12>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삭제 <2004.3.12>
10. 삭제 <2004.3.12>
11. 삭제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목개정 2004.3.12]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⑥ 의회비(205목)

-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6-5. 업무추진비(205-05, 205-06)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격려금 지출은 현금성 지출인 점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발급절차 중 의무적제한업종 참고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 . 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 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MEMO...

MEMO...

MEMO...

MEMO...